



#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4)

서영호 /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 I.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 1.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을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의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

### 2. 선급금 지급 내용과 비율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급금 지급 대상 수급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선급금 내용을 변경해서도 아니되며 그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② 판단기준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하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예시>

A라는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 지급대상공사 또는 품목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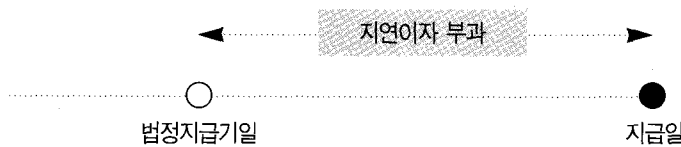
### 3. 선급금 지급 시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 제조 및 수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계약체결 전에 또는 제조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이하 이와 같은 지급시기를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 4.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 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자율에 의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선급금 지급일자가 1997. 4. 1 이전인 경우의 지연이자율 : 연리 25%
- 선급금 지급일자가 1997. 4. 1 이후부터 1998. 1. 12인 경우의 지연이자율 : 연리 18%
- 선급금 지급일자가 1998. 1. 13 이후인 경우의 지연이자율 : 연리 25%

- ②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 ③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도 선급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연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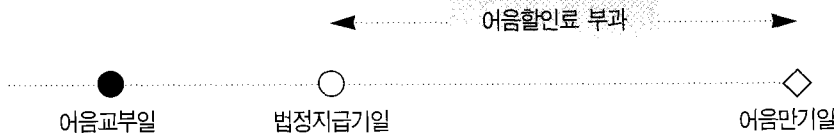
### 5.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어음할인료

- ①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에 의거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



###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어음교부일이 1998. 5. 11 이전인 경우의 어음할인율 : 연 12.5%
- 어음교부일이 1998. 5. 11 이후부터 1998. 12. 31인 경우의 어음할인율
  - 어음결제기간(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연 17.0%
  - 어음결제기간(어음교부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9.0%
- 어음교부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의 어음할인율 : 연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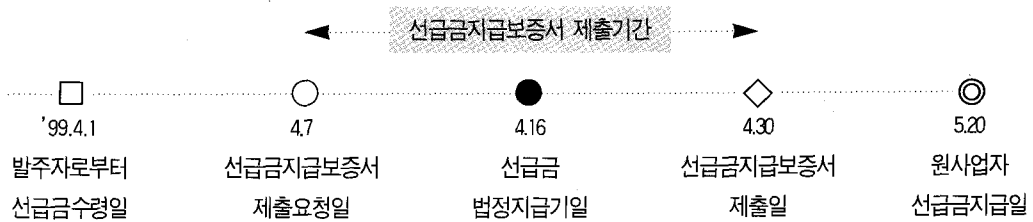
- ③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내인 경우에는 어음할인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즉 선급금 미지급이 됨).
- ⑤ 어음은 “할인가능한 어음”이어야 하며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 ⑥ 선급금 지급에 대한 어음할인료 역시 선급금 지급 및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 6. 선급금 지연지급에 있어서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기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에서 공제한다.



〈이자부과 일수 계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수[34일(4. 16~5. 20)] - 선급금지급보증서제출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일수[23일(4. 7~4. 30)] = 11일

### 7.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부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예시1〉 선급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공사금액의 20%)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1999. 4. 1



(단위 : 만원)

구분	기성금액		당 해 선급금 ①	선급금 기산일 ②	선 급 금 지연일수 ③	지연 이자 ④
	일자	금액				
1회기성	'99. 4. 30	1,000	200	'99. 4. 2	29	4
2회기성	'99. 5. 31	1,000	200	'99. 4. 2	60	8
3회기성	'99. 6. 30	1,000	200	'99. 4. 2	90	12
4회기성	'99. 7. 31	1,000	200	'99. 4. 2	121	17
5회기성	'99. 8. 31	1,000	200	'99. 4. 2	152	21
계		5,000	1,000			62

- 주) ① 당해선급금 : 미지급 선급금 전액(1,000만원)×당해기성금(1,000만원)/총계약금액(5,000만원)  
 ② 선급금기산일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의 익일)  
 ③ 선급금 지연일수 : 선급금기산일로부터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④ 지연이자 : 당해선급금×25%(지연이자율)×선급금지연일수/365

〈예시2〉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선 급 금 : 2,000만원(공사금액의 20%)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 1999. 4. 30

- 선급금 기지급액 : 1,000만원(1999. 5. 10 현금 지급)

⇒ 지연일수 : 10일(4. 30~5. 10)

⇒ 지연이자 : 1,000만원×25%(지연이자율)×10일(지연일수)/365 = 6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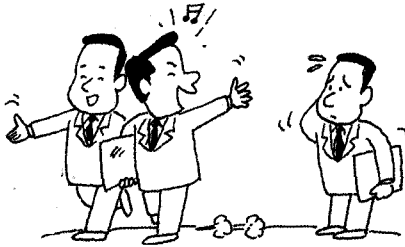
- 미지급한 선급금 1,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608만원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됨.

(단위 : 만원)

구분	기성금액		당 해 선급금 ①	선급금 기산일 ②	선급금 지연일수 ③	지연 이자 ④
	일자	금액				
1회기성	'99. 5. 31	2,000	200	'98. 5. 1	31	4.2
2회기성	'99. 6. 30	3,000	300	'98. 5. 1	61	12.5
3회기성	'99. 7. 31	1,000	100	'98. 5. 1	92	6.3
4회기성	'99. 8. 31	2,000	200	'98. 5. 1	123	16.8
5회기성	'99. 9. 30	2,000	200	'98. 5. 1	153	21.0
계		10,000	1,000			60.8

- 주) ① 당해선급금 : 미지급선급금(1,000만원)×당해기성금(2,000만원)/총계약금액(10,000만원)  
 ② 선급금기산일 :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의 익일)  
 ③ 선급금 지연일수 : 선급금기산일로부터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④ 지연이자 : 당해선급금×25%(지연이자율)×선급금지연일수/365

# 경쟁사업자 배제



예를 들어, 막대한 재력을 가진 대기업이 일시적 손실을 각오하고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중요한 원료를 터무니없이 비싼값으로 사들임으로써 경쟁자가 그 원료를 구입할 수 없게하여 엄청난 손실로 인하여 그사업을 더이상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규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